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동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자산매각대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1.16.~ 1.3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영산로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배병*	경기 여주시 여양로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최종*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